

제 호

교육훈련기관 지정서

1. 기관명 · 단체명:

2. 대표자:

3. 주 소:

4. 교육과정:

「밀산업 육성법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(단체)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